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4. 5. 21 선고 2023가단2030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중양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미

담당변호사 김진모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4. 23.

판 결 선 고 2024. 5. 21.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3. 4.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2023. 4. 24. 마친 어선원부상 소유권변경등록의 말소등등록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C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구분	약정일	보증기간	대출예정금액	보증금액
1	2012. 8. 3.	2012. 8. 3.~2015. 8. 3.	200,000,000원	170,000,000원
2	2013. 10. 2.	2013. 10. 2.~2023. 10. 2.	50,000,000원	45,000,000원
3	2019. 9. 30.	2019. 9. 30.~2029. 9. 30.	200,000,000원	170,000,000원
4	2015. 3. 27.	2015. 3. 27.~2017. 3. 27.	170,000,000원	153,000,000원

나. C은 2023. 4. 2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이라 한다)을 마쳤다.

다. C은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23. 6. 30. C을 대신하여 D은행에 합계 520,321,50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전남 완도군 E 전 317㎡ 및 위 토지 지상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 99.36㎡(시가 합계 99,273,400원)와 이 사건 선박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D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F에 대한 4,255,000원의 신용대출금 채무, G 주식회사에 대한 28,530,00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는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이 법원의 사단법인 H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5일 후인 2023. 5. 9.경부터 대출금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23. 6. 30.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채무초과 상태인 C이 이 사건 선박을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하는 행위로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피고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도연

별지